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439
----------	------

2020년 4월 22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4월 3일, 서울특별시장
- 나. 회부일자 : 2020년 4월 8일
- 다. 상정일자 :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20년 4월 22일 상정, 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 가. 제안이유

지방소방공무원을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서울특별시 조례의 일괄 개정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1)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2조)
  - 서울특별시 소속 국가직 소방공무원에게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신설

(2)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3조)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에 '서울특별시 소속 소방정 이하 소방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신설

(3)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 제4조)

- 장애를 입은 서울특별시 소속 국가직 소방공무원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 신설

(4) 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

- 공직자에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포함

(5) 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조)

-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계급명 정비 ('지방' 삭제)

### 3. 검토보고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 ■ 개요

- 본 조례안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법령이 제·개정<sup>1)</sup>되고 '20.4.1.일자로 국가직 전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준비가 필요한 서울시 5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 그동안 「지방공무원법」 적용을 받던 지방소방직이 국가직으로 전환됨으로써 관련 조례의 불일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 후생복지 등 행정공백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하겠음.

[표 1]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 조례 5건

자치법규명	주요 개정내용	서울시소관 부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소방공무원에게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신설	행정국 인력개발과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위원회의 관할에 서울특별시 소속 소방정 이하 소방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신설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 장애를 입은 소방공무원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 신설	행정국 인사과
청렴 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공직자에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포함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계급명칭 '지방' 삭제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1) 소방 국가직화 제·개정 법률 :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및 대통령령 29개, 행정안전부령 7개

##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추진 현황

- 소방 국가직화 추진은 2017년 10월 26일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를 통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추진방안’이 발표되면서 기본적인 방향이 마련되었고,
- 2018년 10월에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통해 소방직소방 공무원 국가직화와 소방인력 충원에 필요한 인건비 지원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 등 재정 지원에 대한 정부안이 확정되었고, 2019년 12월 10일 관련 법률 개정·공포와 함께 금년 4월 1일 본격 시행됨.
- 참고로, 국가직 전환에 따라 ‘신분·인사’는 국가직으로 단일화하되, 임용권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였으며, ‘조직’ 역시 지역단위의 종합적인 재난대응을 위해 시·도 소속으로 유지하는 한편, 위상을 기존 부시장 산하에서 시·도지사 직속으로 상향함으로써 소방본부의 독립성을 강화하였음.
- ‘재정’은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소방특별회계를 법률(「소방재정 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2021.1.1.시행)」)로 격상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비율의 법제화와 현장인력 충원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 지원을 확대토록 하고 있으며,
- ‘후생복지’는 지자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시·도 조례를 적용하고, ‘복무’는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하되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시·도 조례를 적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 주요골자별 의견

가.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관련 (안 제2조)

- 안 제2조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중 제1조(목적)에 지방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국가직공무원의 후생복지도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표 2]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 ----- -----.

- 개정안에 새로이 포함되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3조2)제3항은 동 규정의 적용범위가 행안부 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하여만 적용토록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예외 조항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적용’토록 하고 있음.

2)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영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는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
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3.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4.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신설 2020. 3. 10.>

④ 운영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그 기관에 근무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 이는 소방재난본부 소속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어도 임용권과 조직이 시·도지사로 위임되어 실제 근무형태가 예전과 다름없기에 국가직 전환 이전에 적용되었던 서울시 후생복지 혜택을 그대로 적용하기 위한 조치라 하겠으며, 별다른 문제는 없음.

나.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안 제3조, 제5조)

- 안 제3조는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기능)3)제2항에 신규로 서울시 소속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를 포함시킴으로써 국가직으로 전환된 서울시 소속 소방공무원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에 두 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라 하겠음.([표 3]참조)

[표 3]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능) ① (생략) ② 위원회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2. (생략)	제3조(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1. (현행과 같음) 2. <u>서울특별시 소속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u> 3. (현행 제2호와 같음)

- 3)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한다.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2.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3.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4. 그 밖의 법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 ② 위원회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소속 4급이하 공무원(시의회를 포함한다)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자치구의회 의원 및 자치구의 4급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 다음으로, 안 제5조는 「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중 공직자의 범위에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외에도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을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음.([표 4]참조)

[표 4] 「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_____ -----.
1. “공직자”란 서울특별시 소속 및 산하 기관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_____ -----.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나. ~ 라. (생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2. (생략)	2. (현행과 같음)

다.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화재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안 제4조, 제6조)

- 안 제4조는 현행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제1조(목적)에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의 예외규정을 추가하고, 제2조(정의) 중 ‘장애인공무원’의 정의에 서울시에 두는 소방공무원을 포함토록 하고 있음.([표 5]참조)

[표 5]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공무원법</u>」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장애인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u>공무원</u>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p>2. ~ 4. (생략)</p>	<p>제1조(목적) ----- 「<u>지방공무원법</u>」 제77조 및 「<u>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u>」 제33제항-----.</p> <p>제2조(정의)-----.</p> <p>1 ----- <u>소속 공무원</u>(서울특별시에 두는 소방공무원을 포함)중-----.</p> <p>2. ~ 4. (현행과 같음)</p>

- 다음으로, 안 제6조는 「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중 ‘지방소방정부터 지방소방정값’에서 ‘지방’을 삭제한 ‘소방정부터 소방정값’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역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후속조치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음.([표 6]참조)

[표 6] 「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①·② (생략)</p> <p>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p>	<p>제8조(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p>



<p>는 위촉한다.</p> <p>1. 시 소방재난본부 소속 <u>지방소방정부터</u> <u>지방소방정감</u>에 상당하는 소방공무원</p> <p>2. ~ 7. (생 략)</p> <p>④ ~ ⑥ (생 략)</p>	<p>1. _____ <u>소방정부터 소방정</u> <u>감</u> _____</p> <p>2. ~ 7. (현행과 같음)</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	---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1439
----------	------

제출년월일 : 2020년 4월 3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지방소방공무원을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서울특별시 조례의 일괄 개정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2조)

- 서울특별시 소속 국가직 소방공무원에게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신설

나.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3조)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에 '서울특별시 소속 소방정 이하 소방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신설

다.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 제4조)

- 장애를 입은 서울특별시 소속 국가직 소방공무원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 신설

라. 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

- 공직자에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포함

마. 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조)

-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계급명 정비  
(‘지방’ 삭제)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소방공무원법」,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등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2) 입법예고: 생략

※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표현·자구의 단순변경으로 입법예고 생략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소방공무원을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서울특별시 조례의 일괄 개정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법」 제77조”를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으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서울특별시 소속 소방청 이하의 소방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법」 제77조”를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공무원 중”을 “소속 공무원(서울특별시에 두는 소방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으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제6조(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지방소방정부터 지방소방정감”을 “소방정부터 소방정감”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 ----- -----.</p>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능) ① (생략) ② 위원회의 관할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생략) <u>&lt;신 설&gt;</u>  2. (생략)	제3조(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u>서울특별시 소속 소방정 이                      하의 소방공무원과 그 퇴직공                      직자에 관한 사항</u> 3. (현행 제2호와 같음)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장애인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 ---- 소속 공무원(서울특별시에 두는 소방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 ----- -----.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공직자”란 서울특별시 소속 및 산하 기관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p style="padding-left: 2em;">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u>공무원</u></p> <p style="padding-left: 2em;">나. ~ 라. (생략)</p> <p>2. (생략)</p>	<p>제2조(정의) ----- ----- -----.</p> <p>1. ----- ----- -----.</p> <p style="padding-left: 2em;">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u>공무원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u></p> <p style="padding-left: 2em;">나. ~ 라.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①·② (생략)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 다. 1. 시 소방재난본부 소속 <u>지방                      소방정부터 지방소방정감에</u> 상당하는 소방공무원 2. ~ 7. (생략) ④ ~ ⑥ (생략)	제8조(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 <u>소방</u> <u>정부터 소방정감</u> ----- ----- 2. ~ 7.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이 조례안은 「소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지방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의 인용 법령 또는 제급 명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비용발생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은 비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의안으로서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4. 작성자

-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담당자 김라리(02-3706-1322)